

## 법률실무특임교원의 임용, 그 잠정적인 지위 및 운용 등에 관한 특별규정

제 1조(목적) 본 규정은 향후 도입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인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 그리고 법률실무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비추어 법학이론 및 법률실무의 교육을 담당할 우수한 법률실무교원후보자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면서, 경희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내에 법학전문대학원이 현실적으로 설립되기 전까지 그 법률실무교원후보자의 임용요건, 지위 및 처우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그 법률실무교원후보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를 성공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본교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정의)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이론 및 법률실무교육을 담당할 법률실무교원후보자(이하 “법률실무특임교원”이라 한다)라 함은 본교 내에 설치될 법학전문대학원과 학교법인 고황재단이 추진하는 법률사업에서 그 법학이론 및 실무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업과목의 강좌, 기타 교육과 연구 및 법률실무활동을 담당할 전임교원을 말한다.

제 3조(종류) ① 법률실무특임교원은 본교 내에 설치될 법학전문대학원과 학교법인 고황재단이 추진하는 법률사업에서 담당할 교수역할과 실무역할의 비중에 따라 교수 중심교원(Teaching lawyer-professor : TL형)과 실무중심교원(Practicing lawyer- professor : PL형)으로 구분한다.

② 제1항 소정의 구분기준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.

제 4조(자격) 법률실무특임교원은 대학교원으로서 자질과 품위를 가진 자로서 다음의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
1. 법률실무에 뛰어난 능력 및 경험을 가진 한국변호사자격소지자
2. 법률실무에 뛰어난 능력 및 경험을 가진 외국변호사자격소지자
3. 한국변호사자격 또는 외국변호사자격의 소지자로서 법학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업적을 가진 자
4. 한국변호사자격 또는 외국변호사자격의 소지자로서 국내외의 대학교에서 법학교육 경력을 가진 자
5. 공무원, 국제기구, 공인된 언론기관, 비정부기관(NGO) 등의 근무경력자로서 법률 실무에 특별히 뛰어난 능력 및 경험을 가진 자
6.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가 위 1호 내지 5호 소정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자

제 5조(직위) ① 법률실무특임교원의 직위는 정교수, 부교수,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한다.

② 제1항 소정의 직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.

제 6조(임용기준) ① 법률실무특임교원의 임용기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1. 학위의 종류와 내용
  2. 판사, 검사 및 변호사 등 법조인으로서 근무경력
  3. 공무원,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관 등의 전문기관에 있어서 근무경력
  4. 대학교수로의 교육경력
  5. 법학 관련주제에 관한 논문, 저서 등 연구실적
  6.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가 정하는 사항
- ② 법률실무특임교원의 임용 시에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는 제5조 제2항

소정의 기준에 의거해서 지원자의 직위를 정한다.

제 7조(임용내정) 법률실무특임교원은 특별채용하며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임용을 내정한다.

제 8조(임용기간) ① 법률실무특임교원은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한 임용기간에도 불구하고 법률실무특임교원은 당해 임기 중에 그 의사에따라 퇴직할 수 있다. 다만, 당해 학기 강의 중에는 퇴직할 수 없다.

제 9조(소속 등) ① 법률실무특임교원은 본교 내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기 전까지는 법과대학 소속 전임교원으로 보한다.

② 법률실무특임교원은 법과대학의 전임교원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법과대학 소속교수로서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을 진다.

③ 본교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를 취득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, 그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실무특임교원을 개별적 또는 일괄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실무교원으로 전환하며, 그 설립인가를 취득하지 못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전임교원으로서의 잔류 및 그 거취를 결정한다.

④ 제3항 소정의 특별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.

제10조(담당분야 등) ① 법률실무특임교원의 담당분야는 본인의 연구분야, 전문분야의 경력 및 본인 의사 등을 고려하여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② 제1항에 의하여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가 결정한 법률실무특임교원의 담당분야와는 별도로, 법과대학장은 법률실무특임교원의 전문경력, 연구영역 및 의사와 법과대학의 교과과정 및 교과담당교수의 수 등을 참작하여 법과대학에서 법률실무특임 교원의 강의과목 및 담당전공분야를 지정하여야 한다.

제11조(직무 등) ① 법률실무특임교원은 법과대학 전임교수로서의 직무에 종사한다.

② 제1항의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소정의 책임시수 이상의 수업을 담당할 것
2. 시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것
3. 입학시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것
4. 학생지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것
5. 고시지도, 학사운영, 교수회의, 보직 등 본교의 학사행정에 참가할 것
6. 총장 및 법과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업무를 담당할 것

③ 총장은 법과대학장의 요청에 의해서 법률실무특임교원에 대하여 제2항 각호 소정의 담당직무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담당강의 책임시간은 주 3시간미만으로 낮출 수는 없다.

제12조(보수 등) ① 법률실무특임교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되 그 액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한다.

② 제1항에 의해 약정된 보수의 지급방법, 지급일자 등은 본교의 교원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13조(교수업적평가에 관한 특칙) 법률실무특임교원의 교수업적평가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14조(겸직) ① 법률실무특임교원은 총장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 직무를 겸직할

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하여 겸직을 희망하는 법률실무특임교원은 법과대학장에게 일정한 양식의 겸직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과대학장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③ 전 2항에 의하여 법률실무특임교원이 겸직을 하는 경우에도, 총장은 학사행정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겸직 그 자체 및 그 업무활동의 중지 또는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에 법률실무특임교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5조(휴식년제) ① 법률실무특임교원에 대해서는 무급의 휴식년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 소정의 휴식년제도에 의하여 법률실무특임교원이 휴식년을 가진 경우에도 교수연구년제도에 의한 연구년을 신청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 다만, 휴식년제도에 기한 휴식기간은 연구년을 신청하기 위한 단위 근무 년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.

③ 휴식년제도의 요건과 실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 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16조(특별의무)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설립인가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법률실무특임교원은 임용 후 학교법인 고황재단이 추진하는 법률사업에 참가하여야 한다.

제17조(임용계약) ① 학교법인 고황재단 이사장은 본 규정의 취지 범위 내에서 법률실무특임교원의 종류, 지위, 임용기간, 보수, 전공영역, 특별의무 등 기타 임용조건을 명시한 구체적인 임용계약서를 마련하여 법률실무특임교원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임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.

② 제1항은 법률실무특임교원의 재임용, 승진 등 지위변경의 경우에도 적용된다.

제18조(준용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의하며,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범위에서 본교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

제19조(본 규정의 효력) 본 규정은 본교 교원임용관련 제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, 본교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를 취득하여 본교 내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원에 관한 관련규정이 마련되는 때에는 그 규정에 우선하지 못한다.

#### 부 칙

① 본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